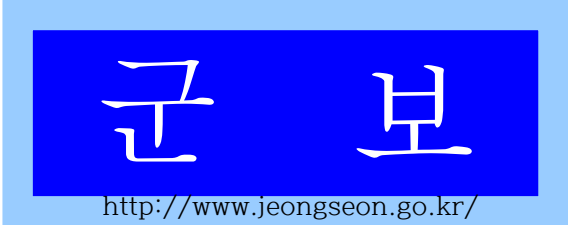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68호 2021. 6. 16.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1-79호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1-743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 면허계획 공고.....3
- 정선군 공고 제2021 - 744호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12
- 정선군 공고 제2021 - 745호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17
- 정선군 공고 제2021-792호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1-79호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의제 협의한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증축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4일

정 선 군 수

- 1. 위 치: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73-12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사업
 - 나. 명 칭: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 변경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면적(㎡)		
교통시설	자동차정류장	5,043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정류장 A=5,043㎡(구역면적) <input type="checkbox"/> 증축내용(A=67.42㎡) ▪정비동 A=67.42㎡	

-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 가. 성 명: 정선군수(안전과)
 - 나. 주 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17
- 5. 사업기간
 - 가. 착 수 일: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순 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관 계 인	성 명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의 종 류 및 내 용
1	고한읍 고한리	149-4	임	108	21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2	고한읍 고한리	151-1	도	1,187	300	국(국토교통 부)	-	-	-	-
3	고한읍 고한리	273	천	91,161	868	국(건설부)	-	-	-	-
4	고한읍 고한리	273-12	천	3,227	2,709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5	고한읍 고한리	154-3	도	783	23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6	고한읍 고한리	273-14	천	1,122	1,122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계		6필지			5,043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1-743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 면허계획 공고

정선군 공고 제2021-738호(2021년 하반기 정선시티투어 버스임차용역)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의 2에 따라 정선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위한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정 선 군 수

- 1. 사업종류 :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
- 2. 사 업 명 : 2021년 하반기 정선시티투어 버스
- 3. 공고기간 : 2021. 6. 7. ~ 2021. 6. 11.
- 4. 신청 접수기간 : 2021. 6. 11. ~ 2021. 6. 16. (4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 5. 한정면허 내용

가. 운행구역

노선명	운행코스	
남부권역	석탄회관 앞 공영주차장(09:30) ⇨ 하이캐슬리조트(09:50) ⇨ 마운틴콘도(10:10) ⇨ 메이힐스리조트(10:30) ⇨ 삼탄아트마인·정암사(12:00) ⇨ 고한구공탄시장(13:20) ⇨ 화암동굴(15:20) ⇨ 메이힐스리조트(16:05) ⇨ 석탄회관 앞 공영주차장(16:20) ⇨ 하이캐슬리조트(16:35) ⇨ 마운틴콘도(16:45)	
무궁화열차 연계형 노선	비장날	민동산역(10:50) ⇨ 정선아리랑시장(13:00) ⇨ 아리힐스(14:30) ⇨ 덕우리체험마을(16:10) ⇨ 민동산역(16:40)
	장날	민동산역(10:50) ⇨ 정선아리랑시장(13:50) ⇨ 아리아라리공연(14:00) ⇨ 아라리촌(16:10) ⇨ 민동산역(16:40)

나. 운행대수 : 총 2대(노선별 1일 1대)

다. 서비스의 수준 : 시티투어 탑승자의 안전을 최선으로 하고, 친절 운행

라. 면허기간

- 남부권역 연계형 노선 : 2021. 7. 1. ~ 2021. 12. 31.

- 무궁화열차 연계형 노선 : 2021. 7. 1. ~ 2021. 12. 31.

마. 보조금의 지급 : 책정된 1회 버스임차비 이외의 지급은 없음

바. 한정면허 신청자격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면허기준 요건을 갖춘 자

6. 구비서류(제출서류)

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1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별지6)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사업계획서 1부

라.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각 1부

7. 사업자 선정 절차

- 정선군 공고문-738호(2021년 하반기 정선시티투어 버스임차용역)에 의거 낙찰예정자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면허 서류심사 후 면허 발급

8. 접수처 : 정선군청 안전과 교통행정팀 (033-560-2366)

※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9.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교체 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때에는 면허취소와 함께 형사고발 할 수 있음

나.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각 지침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함

다. 정선시티투어 버스임차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함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정선군청 안전과 교통행정팀(560-2366)으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0. 1.>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④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운영형태:)	
⑤ 예정 노선 또는 예정 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대수		
⑦ 공익상 필요한 사유		
⑧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제3항 관련)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5px;">정 선 군 수</div> 귀하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첨부 서류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다.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라.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노선도 1부(운영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바.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2. 제17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p>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서

접수번호

작성기준 : 공고일 기준

1. 주사무소 현황

업체명	건물명	위치(주소)	비고

※ 주사무소 확보현황 증빙서류 제출

2. 임원 현황

연번	직	성명	주민번호	주소지	본적지	비고

3. 자본금 확보현황 및 추가자금 확보방안

(단위: 백만원)

업체명	자본금 확보액	추가자금 확보방안	비고

4. 현재 차고지 위치 및 수용능력

차고지명	소재지	수용능력 (확보된 면적)	수용대수 (대당 23㎡)	비고

※ 증빙서류 제출

5. 현재 보유차량 현황

연번	자동차의종류	승차인원	형식	등록일	비고
					운행차량 예비차량 구분 표기

6. 운송 부대시설 확보계획

구 분	소재지	수용능력(m ²)	자가.임대 표시
사무실 및 영업소			
차고설비 및 부대시설			
세차장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기타시설			

<정량평가 항목>

7. 행정처분 현황

(단위: 건)

연 도	과징금	과태료	종사자 자격취소	합계	비고
2019년					
2020년					

※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자료 미제출시 해당평가분야 최저등급 부여

8. 운수종사자(버스기사) 재직 현황

성명	생년월일	입사년도	재직기간	비고
○○○	751234	2019.1.1	2.3년	
○○○	751234	2019.1.1	2.3년	
합계		종사자 00명	평균 00년	

※ 증빙서류(종사자별 재직재직기간 확인 가능 자료, 총 운수종사자 확인가능 자료 등) 제출

※ 미제출시 해당평가분야 최저등급 부여

9. 교통사고 발생 현황

연 도	경상	중상	사망	합계	비고
2019년					
2020년					

※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정성평가 항목>

10. 투명경영을 위한 방안 및 민주적 경영을 위한 노력

가. 투명경영을 위한 방안

나. 합리적 노사관계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을 위한 방안

11. 안전운행 및 준법운행

가. 운수종사자 관리 및 교육계획

나. 운행질서 확립 계획

12. 고객만족도 제고 및 환경개선

가. 운전기사 친절도 향상방안

나. 이산화탄소 절감 등 환경개선 방안

13. 기타 운송사업 차별화 및 서비스 향상 방안

※ 버스 경영혁신을 위한 방안, 대중교통 서비스향상, 지역사회 공헌계획 등

2021.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 약 서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 1.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경우 선정노선의 운송·관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정선군의 대중교통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 2.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제안 안내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정선군수 귀하

인 감 신 고 서

인 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위 인감은 본 사업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선정의 사업신청부터 선정완료시까지 정선군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2021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21 - 744호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8일

정 선 군 수

1. 제정(개정)이유

금연지도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금연지도원 위촉 시 공모 및 심의 절차 의무화 및 이에 따른 절차가 마련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법적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3. 주요내용

금연지도원 위촉 공모 및 심사절차 의무화(안 제3조) 신설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 : 2021.6.8. ~ 2021.6.28.(20일)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보건소(건강증진과)
 - 연락처 : 전화(033-560-2863), 팩스(033-563-4000)
 - 주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정선군보건소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직접방문.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정선군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으로”를 “금연지도원”으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공개모집)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 위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촉 계획을 수립하여 금연지도원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u></p> <p>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u>정선군 금연지도원</u>(이하 “<u>금연지도원</u>”이라 한다)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u>정선군수</u>(이하 “<u>군수</u>”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 3. (생략)</p> <p>② ~ ④ (생략)</p>	<p><u>제3조(금연지도원의 공개모집)</u></p> <p><u>정선군수</u>(이하 “<u>군수</u>”라 한다)는 정선군 금연지도원(이하 “<u>금연지도원</u>”이라 한다) 위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u>금연지도원을 공개모집</u> 하여야 한다.</p> <p><u>제3조의2(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u> ① ----- ----- <u>금연지도원</u> ----- ----- ----- ----- <u>군수</u>-----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정선군 공고 제2021 - 745호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8일

정 선 군 수

1. 제정(개정)이유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로 인한 과태료 발생 시 지자체 간의 과태료 편차로 인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으로 과태료 권고 수준인 5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2. 법적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3. 주요내용

금연구역 흡연에 따른 과태료를 5만원으로 변경(안 제10조)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 : 2021.6.8. ~ 2021.6.28.(20일)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보건소(건강증진과)

- 연락처 : 전화(033-560-2863), 팩스(033-563-4000)

- 주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정선군보건소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직접방문.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의 과태료를 5만원으로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과태료)</p> <p>① 군수는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p> <p>② (생략)</p>	<p>제10조(과태료)</p> <p>① ----- ----- -----5만원의 -----.</p> <p>② (생략)</p>

정선군 공고 제2021-792호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강원도로부터 자치법규(안)이 시달되어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 및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골목형상점가의 각종 공모사업 참여,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 등으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9항)
- 골목형상점가 지정 근거 조항 신설(안 제39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0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1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2조)
- 청년상인 기준 및 청년상인 육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3조~제44조)

3. 일부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1. 6. 15. ~ 2021. 7. 5.

5. 의견제출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경제과

☞ 전 화: 033-560-2440

☞ F A X: 033-560-2594

☞ E-mail: miran697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상점가”를 “상점가·골목형상점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상점가”을 “상점가·골목형상점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상점가에서”를 “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군수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제21조제1항 중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를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골목형상점가”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정관의”를 “정관을”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 및 제20조”을 “법 제11조, 법 제11조의2 및 법 제20조”로, “상점가”를 “상점가·골목형상점가”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상점가”를 “상점가·골목형상점가”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상점가”를 “상점가·골목형상점가”로 한다.

제10장(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

제3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40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받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1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2.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4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11장(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

제43조(청년상인의 기준) 영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으로,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44조(청년상인의 육성) ① 군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의 범위에서 추진하거나 청년상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청년상인의 경우 중소기업부처기업부의 청년몰 조성사업 등 창업 육성 사업을 통해 일정한 요건 심사를 통과하여 창업한 자에 한한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창업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4.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② 군수가 청년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지원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상인은 창업 목적, 세부 소요예산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상인”이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u>상점가</u>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p> <p>2. ~ 4. (생략)</p> <p>5.“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u>상점가</u>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p> <p>6. (생략)</p> <p>7.“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상권 활성화 구역 및 <u>상점가</u>에서 사업을 영위하</p>	<p>제2조(정의) ----- -----.</p> <p>1. ----- ----- <u>상점가·골목형상점가</u> ----- ----- -----.</p> <p>2. ~ 4. (현행과 같음)</p> <p>5. ----- ----- ----- ----- ----- <u>상점가·골목형상점가</u> ----- -----.</p> <p>6. (현행과 같음)</p> <p>7. ----- ----- ----- ----- ----- <u>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u></p>

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
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
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생 략)

<신 설>

제21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
인회(이하 “상인회” 라 한다)
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생 략)

제22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생
략)

② 정관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생 략)

제31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
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
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서 -----

-----.

8. (현행과 같음)

9.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
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군수
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제21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골목
형상점가-----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상인회 정관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정관을 -----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법 제11조의2 및 법 제
20조-----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② ~ ④ (생략)

제33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시장
·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
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104조제3항 및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정선
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
례」, 「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정선군 사무
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
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4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
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
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 상점가·골목형상점가----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위탁관리) ① -----

----- 상점가·골목
형상점가-----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수탁자의 의무) ① -----

----- 상
점가·골목형상점가-----
-----.

② ~ ④ (생략)
<신설>

<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장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

제3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40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

<신 설>

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받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

<신 설>

- 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 5.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
칙(정관) 및 명부
-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1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
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
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 2.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
진 구역

<신 설>

제4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은 경우
- 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

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11장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

제43조(청년상인의 기준) 영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으로,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44조(청년상인의 육성) ① 군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거나 청년상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청년상인의 경우 중소기업부의 청년몰 조성사업 등 창업육성사업을 통해 일정한 요건 심사를 통과하여 창업한 자에 한한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

<신 설>

<신 설>

<신 설>

<p><u><신 설></u></p>	<p><u>개선 지원</u></p> <p>2. <u>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u></p> <p>3. <u>창업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u></p> <p>4. <u>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u></p> <p>① <u>군수가 청년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지원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상인은 창업 목적, 세부 소요예산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	--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 1. 상점가 명 :
- 2. 대표자 성명 :
- 3. 소재지 :
- 4. 면적/점포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제2조의2 및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m ² , 건물 연면적: m ² , 영업장 면적: m ²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m ²)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0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및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창업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4.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

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의2(청년상인의 기준)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